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투자신탁(채권)

□ 변경 사유 : ①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문성호)
 ③ 투자위험 추가

□ 효력발생일 : 2026. 3. 4.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2. 11. 기준 2026. 1. 30.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6. 2. 11.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1. 31. 기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추가 최근 기준으로 기재	<신 설> -	문성호 2026. 1.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부책임운용역 추가 최근 기준으로 기재	<신 설> -	문성호 2026. 1.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 년 경과내역 삭제 부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 양진모 (2020.08.26 ~ 현재) 부책임운용역 : 전춘봉 (2020.08.26 ~ 현재) <신 설>	<삭 제> <삭 제> 부책임운용역 : 문성호 (2026.03.04. ~ 현재)

<p>10.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p>	<p>투자위험 추가</p>	<p><신 설></p>	<p><u>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 위험</u>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환매조건부채권(RP)</u>은 <u>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 계약입니다.</u>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u>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u> 또한 <u>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p>	<p>투자위험 추가</p>	<p><신 설></p>	<p><u>투자자금 회수위험 (환매시 유동성 위험)</u> : 이 투자신탁은 <u>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의 비시장성 / 비유동성으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u> 또한, <u>투자대상 자산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 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p>	<p>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u>6.12%</u></p>	<p>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u>5.57%</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p>	<p>-</p>	<p><u>2026. 2. 11. 기준</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u></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u>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u>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재무정보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2. 11.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2. 11.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2. 11.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1.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6 기(2023.12.31)</u> <u>제 25 기(2022.12.31)</u>	<u>제 27 기(2024.12.31)</u> <u>제 26 기(2023.12.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1. 31. 기준</u>